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정례회(2022. 12.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2-144
----------	--------

2022. 12. 2.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신중갑 의원 외 12명
- 나. 제 안 일 : 2022. 11. 22.
- 다. 회 부 일 : 2022. 11. 25.

2. 제안이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라.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안 제5조)
- 마. 예우 및 지원, 표창(안 제6조, 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 입법예고 : 2022. 11. 18.~ 11. 2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합법적인 장기 등의 이식과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뼈, 인대 등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급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제정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7개 및 부칙 1개로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의 설치, 예우 및 지원,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구청장은 마포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마포구청은 현재까지 등록기관으로 미지정되어 있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등과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 주체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임.
- 국가에서는 1999년 장기이식법을 제정한 이후 사적 측면이 아닌 공공재로서 장기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모든 국민들이 장기 이식을 공정하고 분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아울러 장기이식 비용에 대해 과거 비급여로서 수혜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을 2017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수혜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2021년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등으로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
- 하지만, 법 제정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희망등록업무 운영이 미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담당업무를 부여한 곳은 161곳, 전국 29% 65곳은 등록업무 조차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장기기증희망 등록기관 현황〉

구분	계	등록기관 운영 자치구		미운영
		운영	기관명	
서울시	25	15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10

- 또한, 전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254개 중 49%, 12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증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장기기증에 관한 업무 담당이 불명확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본 제정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존중하여 유가족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위로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등록창구 여부와 기증자 예우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의 차이로 기증자의 실질적 처우에 대한 편차가 많이 발생함.
- 따라서, 국민생각함 설문결과¹⁾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등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 및 집행부에서는 실질적 유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보건복지부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제도

1. 뇌사 기증자 지원한도액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액(만원)
뇌사자 장기기증자	기증한 경우	장제비	360
		진료비	180
		사회단체기부(유족희망시)	54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제비	360

2. 순수기증자 지원한도액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액(만원)
순수기증자	기증한 경우	정기검진 진료비	간장	70
		상한액	신장, 췌장, 췌도, 소장	60
	기증 못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상한액		150(1회한함)

※ 지방자치단체 예우사업 종류

1. 장례지원서비스(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이용료 면제)
2. 추모공원설립
3. 유가족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제공
4. 국가·공영시설 무료입장 및 주차시설료 면제 등
5. 장기기증 이식인과의 서신교류 등

1)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2021.3, 국민권익위원회

[관 계 법 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 조직의 기증·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 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